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2007. 2. 23 “여권접수 지방분소승인” 에 따른 여권업무와

2007. 1. 30 “희망스타트 사업 시범지역확정”에 따른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추진 전담인력 보강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를 721명에서 733명으로 12명증원(안 제2조)

○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1)

- 일반직 617명 → 626명 (증 9명)
- 기능직 102명 → 105명 (증 3명)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앞으로 우리구에 설치·운영하게 될 “여권접수 지방분소” 근무인력을
확보하고,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도입한 “희망스타트 사업”에
우리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 업무를 추진할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총수를 증원 조정하려는 것으로

(여권업무 인력 10명증원, 희망스타트사업 인력 2명증원)

□ 정원관리 측면에서는

2007. 1. 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 관리토록 되어있어 이번에 12명의 정원이 증원되어도 아직 총액인건비 기준에는 미달하고 있으나

(백만원)

총액인건비	기존인건비	여유인건비	금회 증원인건비
45,648	44,571	1,077	476

※총액인건비 : 2006.12.29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통보(지방조직발전팀-2397호)

□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금년도 우리구 재정사정은 필수경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권업무등이 국가사무임을 감안할 때 인건비를 비롯한 관련예산전액을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 할 수 있다.

⑤「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